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251

발의연월일: 2025. 4. 30.

발 의 자:권향엽·박용갑·김기표

박지원 · 조계원 · 허성무

이성윤 • 이병진 • 문진석

조인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최대 이륙중량이 25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드론 등 초 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2년마다 안전성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하여 수행하도 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안전기술원 인증은 신청 후 검사까지 대기기간만 약 3 개월이 소요되고, 검사 시 드론을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면 드론 운영자의 부담이 상당한 실정임.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용 드론이 전체 드론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인들의 부담이 큰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안전성 인증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이나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인증 업무가 수행되도록 함으로써 지방 드론 운영 자의 인증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5조제8항 후단 신설).

법률 제 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5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호의 업무는 지역별 수요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 역별로 위탁·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⑦ (생 략)	~ ⑦ (현행과 같음)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8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기			
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			
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			
에 위탁할 수 있다. <후단 신	<u>이 경우 제5호</u>		
<u>설></u>	의 업무는 지역별 수요 및 접		
	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위탁ㆍ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u>야 한다.</u>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⑨·⑩ (생 략)	⑨·⑩ (현행과 같음)		